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15

발의연월일: 2020. 7. 30.

발 의 자 : 김상훈ㆍ이종배ㆍ정희용

이 용・전봉민・최승재

홍석준 · 강대식 · 임이자

김도읍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연구시험용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,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 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로 인 한 수출 감소 및 내수 침체로 인하여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 려가 있음.

이에 특정 목적 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고 경기 활성 화를 도모하고자 함(안 제25조의8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8(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시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)에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25조제1항,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8의 개

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5조의8(일반 시설투자에 대한
	세액공제) ① 내국인이 사업에
	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일반 시설에 2023년 12
	월 31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
	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
	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
	1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
	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, 중소
	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)에
	<u>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</u>
	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
	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	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
	<u>25조제1항, 제3항 및 제4항의</u>
	규정을 준용한다.
	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
	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	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
	<u>야 한다.</u>